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안성지서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세청의 효율적인 조직운동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정하며,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인력운동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9명(9급 19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19명(9급 19명)으로 전환하고,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00. ~ 3.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납세서비스제도의 개선”을 “납세서비스제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과세사실판단의 자문에 관한 사항

제32조제8항 중 “69명”을 “68명”으로, “59명”을 “58명”으로 한다.

제8장의 제목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을 “한시조직”으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별표 4의 중부지방국세청의 경기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 기 도	경기광주 세무서	하남지서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
	평택 세무서	안성지서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별표 6 중 총계 “895”를 “896”으로 하고, 일반직계 “891”을 “892”로 하며, 행정사무관 “119”를 “120”으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921”을 “922”로 하고, 일반직계 “917”을 “918”로 하며, 행정사무관 “125”를 “126”으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20,304”를 “20,305”로 하고, 일반직 계 “20,304”를

“20,305”로 하며, 행정사무관 “1,074”를 “1,075”로, 세무서기보 “3,714”를 “3,725”로 하고,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5 다음에 “세무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을 신설하며, 방호서기보 “155”를 “156”으로, 전산서기보 “29”를 “36”으로, 운전서기보 “161”을 “160”으로, 전화상담운영서기보 “24”를 “23”으로, 사무운영서기보 “358”을 “340”으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총계 “20,411”을 “20,412”로 하고, 일반직 계 “20,411”을 “20,412”로 하며, 행정사무관 “1,103”을 “1,104”로, 세무서기보 “3,714”를 “3,725”로 하고,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5 다음에 “세무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을 신설하며, 방호서기보 “155”를 “156”으로, 전산서기보 “29”를 “36”으로, 운전서기보 “161”을 “160”으로, 전화상담운영서기보 “24”를 “23”으로, 사무운영서기보 “358”을 “340”으로 한다.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정보화관리관 빅데이터센터	13명 (4급 1명, 5급 5명, 7급 7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32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26일까지는 별표 10의3을 적용한다.

②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의2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26일까지는 별표 10의4를 적용한다.

[별표 10의3]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

(기획재정부령 제000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

총계	20,304
일반직 계	20,304
고위공무원단	23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7
서기관	188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8
행정사무관	1,074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8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0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전산사무관	3
세무주사	4,255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75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9
세무주사·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

방호주사	2
전산주사	10
세무주사보	4,505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3
세무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3
세무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
방호주사보	3
공업주사보	4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전산주사보	16
운전주사보	1
세무서기	5,361
세무서기 또는 전산서기	23
세무서기 또는 공업서기	5
방호서기	4
전산서기	68
공업서기	1
운전서기	1
세무서기보	3,725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5
세무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

시설서기보	1
방호서기보	156
공업서기보	6
전산서기보	36
운전서기보	160
전화상담운영서기보	23
열관리운영서기보	14
사무운영서기보	340
기록연구사	7

[별표 10의4]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

(기획재정부령 제000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관련)

총계	20,411
일반직 계	20,411
고위공무원단	23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7
서기관	188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8
행정사무관	1,103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8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1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전산사무관	4
세무주사	4,308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74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9
세무주사 ·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

방호주사	2
전산주사	9
세무주사보	4,508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3
세무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3
세무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
방호주사보	3
공업주사보	4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전산주사보	16
운전주사보	1
세무서기	5,383
세무서기 또는 전산서기	23
세무서기 또는 공업서기	5
방호서기	4
전산서기	68
공업서기	1
운전서기	1
세무서기보	3,725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5
세무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

시설서기보	1
방호서기보	156
공업서기보	6
전산서기보	36
운전서기보	160
전화상담운영서기보	23
열관리운영서기보	14
사무운영서기보	340
기록연구사	7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납세자보호관) ①·② (생략)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1.·2. (생략) 3. <u>친절서비스운동</u> 4. <u>납세서비스제도의 개선</u>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운영 5. ~ 9. (생략) ④ 심사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1. ~ 3. (생략) 4. <u>과세사실판단의 자문에 관한 사항</u> ⑤ 심사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1.·2. (생략) <u><신설></u>	제4조의2(납세자보호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2. (현행과 같음) <u><삭제></u> 4. <u>납세서비스제도</u> ----- ----- -- 5. ~ 9. (현행과 같음) ④ ----- ----- --. 1. ~ 3. (현행과 같음) <u><삭제></u> ⑤ ----- ----- --. 1.·2. (현행과 같음) 3. <u>과세사실판단의 자문에 관한 사항</u>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⑦ (생략) ⑧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9명(5급 9명, 6급 59명, 7급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35조(한시정원)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방식 변경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에 두며, 별표 1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정원)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68명----- 58명----- -----. 제8장 한시조직 <삭 제>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6]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행	개정안	증감
총계			895	896	+1
		·	·	·	
		·	·	·	
일반직계			891	892	+1
		·	·	·	
		·	·	·	
행정사무관			119	120	+1
		·	·	·	
		·	·	·	

[별표 6의2]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21</u>	<u>922</u>	+1
·	·	·	
·	·	·	
일반직계	<u>917</u>	<u>918</u>	+1
·	·	·	
·	·	·	
행정사무관	<u>125</u>	<u>126</u>	+1
·	·	·	
·	·	·	

[별표 10]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0,304</u>	<u>20,305</u>	+1
일반직 계	<u>20,304</u>	<u>20,305</u>	+1
·	·	·	
·	·	·	
행정사무관	<u>1,074</u>	<u>1,075</u>	+1
·	·	·	
·	·	·	
세무서기보	<u>3,714</u>	<u>3,725</u>	+11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5		
<u>세무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u>	<u><신 설></u>	<u>1</u>	+1
·	·	·	
방호서기보	<u>155</u>	<u>156</u>	+1
·	·	·	
전산서기보	<u>29</u>	<u>36</u>	+7
운전서기보	<u>161</u>	<u>160</u>	-1
전화상담운영서기보	<u>24</u>	<u>23</u>	-1
·	·	·	
사무운영서기보	<u>358</u>	<u>340</u>	-18
·	·	·	

[별표 10의2]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0,411</u>	<u>20,412</u>	+1
일반직 계	<u>20,411</u>	<u>20,412</u>	+1
·	·	·	
·	·	·	
행정사무관	<u>1,103</u>	<u>1,104</u>	+1
·	·	·	
·	·	·	
세무서기보	<u>3,714</u>	<u>3,725</u>	+11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5		
세무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신 설>	<u>1</u>	+1
·	·	·	
방호서기보	<u>155</u>	<u>156</u>	+1
·	·	·	
전산서기보	<u>29</u>	<u>36</u>	+7
운전서기보	<u>161</u>	<u>160</u>	-1
전화상담운영서기보	<u>24</u>	<u>23</u>	-1
·	·	·	
사무운영서기보	<u>358</u>	<u>340</u>	-18
·	·	·	